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44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소병훈·서미화·김교흥

박지원ㆍ허 영ㆍ이병진

용혜인 • 윤호중 • 김영진

권칠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(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)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,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,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,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또한,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

의견도 제기됨.

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,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3조 등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매년 포전매매 현황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⑦ 제5항에 따른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중 "제53조제1항을"을 각 각 "제53조제4항을"로, "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"을 각각 "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포전매매의 계약) ① ~	제53조(포전매매의 계약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	④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
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	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
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	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
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	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	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
상 품목, 대상 지역 및 신고기	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	
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	
고하도록 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
	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
	하는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이
	법에 따라 재정적・행정적 지
	<u>원을 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
	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
	비자의 보호와 농산물의 가격
	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매년
	포전매매 현황에 대한 실태조
	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⑦ 제5항에 따른 재정적・행정

제90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 전매매의 계약을 <u>서면에 의한</u> <u>방식으로 하지 아니한</u> 매수인
- 2. · 3. (생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3. (생략)
- 3의2. <u>제53조제1항을</u>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<u>서면에 의</u> <u>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</u> 매 도인
- 4. ~ 6. (생략)
- ④ (생 략)

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실태
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<u>다.</u>
∥90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제53조제4항을
신고하지 아
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③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<u>제53조제4항을</u>
신고하지
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-
4. ~ 6. (현행과 같음)
④ (현행과 같음)